

南北韓 共同漁業政策의 課題*

—EC 공동어업정책을 기초로—

김 기 수 ** · 정 형 찬***

The Issues of South and North Korea's Common Fisheries Policy
—Based on EC Commn Fisheries Policy—

Kim, Ki Soo and Jung, Hyung Chan

目 次

I. 머릿말	V. 남북한 공동어업정책방안
II. 남북한 수산업의 현황	1. 공동어로수역의 설정
1. 남북한 경제개황	2. 공동어로수역내에서의 차원의 보존과
2. 남북한 수산업 현황비교	관리
III. 국제수산업협력유형과 EC공동어업정책	3. 공동시장의 조직화
1. 국제수산업협력의 제유형	4. 구조조정정책
2. EC 공동어업정책	5. 대외협력
IV. 남북한 단계별 수산업협력방안	VII. 맷 음 말
1. 남북한 경제통합의 제단계	참고문헌
2. 남북한 수산업부문협력의 단계별 과정	Summary

I. 머릿말

최근 북한의 핵문제로 인해 주춤거리고 있는 남북간의 경제협력도 신정부의 전향적인 통일정책과 북한경제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조만간 재개되어 본궤도에 들어가리라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민간차원의 직·간접교역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은 자본 및 기술협력단계로 발전될 것이며 더 나아가 경제통합단계로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현재 총론적인 거시경제적 접근에 머물러 있는 남북한 경협과 관련한 연구도 이제 각론에 들어가서 구체적인 산업별 경제

* 이 논문은 1992년 교육부지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모과제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초고를 읽고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본교의 박명섭, 최종화교수와 인제대학교의 배진영교수, 수산청의 박종국, 방기혁 사무관 그리고 KDI의 고일동박사께 감사드린다.

** 부산수산대학교 무역학과 조교수

*** 부산수산대학교 수산경영학과 부교수

협력방안이나 정책과제에 대한·분석으로 진전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현재 북한산어류의 반입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수산업부문에서의 남북한 경제협력방안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즉 중·장기적으로 남북한 경제통합의 실현을 전제로 하고 통합단계별로 수산업부문에서의 경제교류협력의 추진방안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수산업부문의 교류협력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남북한 공동어업문제에 중점을 두고 EC 공동어업정책을 배경으로 한 우리의 정책대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Ⅱ장에서 남북한 수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장에서는 국제수산업협력유형과 EC 공동어업정책을 고찰하였다. Ⅳ장에서는 남북한 단계별 수산업협력방안을, 장에서는 남북한 공동어업정책방안을 검토하였고 장에서 결론을 맺고 있다.

Ⅱ. 남북한 수산업의 현황

1. 남북한 경제개황

1980년 중반이후 구소련·중국 등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만은 자력갱생원칙에 따라 대내지향적 경제정책을 고수해 왔다. 그 결과 자본부족과 기술낙후로 인한 경제침체가 가속화되었다. 대외적으로는 구소련 연방의 붕괴와 동구권의 몰락으로 사회주의 국가와의 경제협력기반의 붕괴로 대외무역규모의 축소와 심각한 외화부족으로 인한 원유도입의 격감으로 말미암은 에너지난을 겪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석탄을 비롯한 각종 원자재의 심각한 부족으로 인하여 광·공업부문의 부진이 눈에 띠고 있고 연료공급의 부족으로 인한 농기계 가동 및 선박조업의 애로로 인하여 농업 및 수산업 등의 생산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91년 현재 북한의 1인당 GNP는 1,038달러(남한 6,498달러)로, 경상

<표 1> 1991년 남북한의 주요경제지표 비교

	단위	북한(A)	남한(B)	배율(B/A)
1. 인구	千명	22,058	43,268	2.0
2. 경상GNP	億 \$	229	2,808	12.3
3. 1인당GNP	\$	1,038	6,498	6.3
4. 경제성장률	%	-5.2	8.4	-
5. 대외경제				
무역총액	億 \$	27.2	1,534	56.4
(수출)	"	10.1	718.7	71.2
(수입)	"	17.1	815.3	47.7
(무역총액/경상 GNP)	%	11.9	54.6	-
6. 농·수산물생산량				
곡물	萬 ton	530.7	623.6	1.2
수산물	120.0	298	2.5	
7. 산업구조				
농림·어업	%	28.0	8.1	
광공업	%	38.0	27.9	
서비스업 및 건설업	%	29.1	61.9	

자료 : 한국은행, 1992.

南北韓 共同漁業政策의 課題

GNP는 229억 달러(남한 2,808)로 추정된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경제력차는 1인당 국민소득 기준으로서는 남한이 북한보다 6배 정도이고 경제규모면에서는 12배 이상되고 있다. 대외교역규모면에서도 북한은 91년 현재 27억 달러에 그쳐 남한의 1,534억 달러의 1/50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있으며 대외의존도에 있어서도 11.9%로 남한의 54.6%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¹⁾. 더군다나 91년 말 현재 북한의 외채총액이 92.8억 달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비록 총액면에서는 남한의 1/4밖에 되지 않지만 외채액이 연간 총교역액을 훨씬 상회하고 있고 GNP에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상임을 미루어 볼 때 외화부족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북한의 산업구조를 보더라도 농림어업의 비중이 우리보다 월등하게 높은 반면 주민생활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구조 및 산업기술 발전단계의 차이에서 오는 상호보완성으로 남북한의 경제협력은 상호실익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남북한 수산업 현황비교

가. 수산물 생산량

국토통일원과 한국은행의 추정치를 이용하여 1985년 이후 남북한간의 수산물 생산량을 비교하면 <표 2>와 같다. 북한의 경우 90년에 들어오면서 수산물의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는데 이는 연료공급난과 선박노후화 등으로 인한 출어기회의 감소가 중요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90년 이후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보면 남한의 수산업 규모가 북한의 약 2배 이상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표 2>		1985년 이후 남북한 수산물생산의 비교*		단위 : 만톤
년 도		북한(A)	남한(B)	
1985		242	310	1.2
1986		237	357	1.5
1987		212	333	1.5
1988		215	321	1.4
1989		219	332	1.5
1990		160	327	2.0
1991		120	298	2.4

* : 89년까지의 북한 통계치는 국토통일원 추정치이며 90년 이후는 한국은행추정치임
자료 : 국토통일원, 한국은행

<표 3>		남북한 수산물생산량의 연평균 증가율(1975~1989)		단위 : %
기간평균		북 한	남 한	
1975~1980*		5.5	2.5	
1980~1985		7.3	5.2	
1985~1989		- 2.5	1.7	

* 1975년 이전의 북한수산물생산량 자료는 알려져 있지 않음
자료 : 국토통일원, 한국수산회, 「수산연감」(1991)

1) 이는 북한의 그간의 경제정책기조가 대내지향적 경제정책이었고 이 과정속에 대외무역을 최소화시켜온 데 그 이유가 있음.

있을 것 같다. 수산물 생산의 연평균증가율 추이는 <표 3>에서와 같다. 80년대 후반기에 들어오면서 남북한 모두 성장율의 급격한 둔화를 보이고 있고 특히 북한의 경우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수산물생산을 어업유형별로 비교해 보면 <표 4>에서와 같다. 남한의 경우 해면어업이 거의 70% 이상 차지하고 양식어업은 25%를 약간 초과하는 정도인데 비하여 북한의 경우 해면어업과 양식어업의 비중이 거의 같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해면어업의 생산액은 남한이 북한보다 2배 이

<표 4>		남북한 어업별 생산량(국토통일원 추정치)				단위 : 만톤
		북 한 남		한		
		1988	1989	1988	1989	
수산물총생산량		214.6(100.0%)	218.9(100.0%)	320.9(100.0%)	331.9(100.0%)	
해 면 어 업	107.7 (50.2%)	100.6 (46.0%)	228.6 (71.2%)	244.0(73.5%)		
양 식 어 업	96.4 (44.9%)	106.7 (48.7%)	88.7 (27.6%)	84.8(25.5%)		
내수면어업	10.5 (4.9%)	11.6 (5.3%)	3.6 (1.1%)	3.1 (0.9%)		

자료 : 국토통일원 「북한경제종합평가」(1990)

상인데 비하여 양식어업에 있어서는 북한 절대생산액이 남한의 것을 초과하고 있어 이 부분의 북한의 기술수준이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남북한 어업협력의 방향설정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연근해의 어업자원 상태를 대략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로서 해면어업 중 연근해어업과 원양어업의 비중은 <표 5>와 같다. 1989년 남한의 경우 총수산물 생산 중 연근해어업의 비중이 45.5%이고 원양어업의 비중이 28.0% 정도이다.

<표 5>		1989년 南北韓의 연근해어업의 비중		단위 : 만톤, %
		북 한	남 한	
수산물생산량		218.9(100.0%)	331.9(100.0%)	
연근해어업		94.6 (43.2%)	151.0 (45.5%)	
원 양 어 업		6.0* (2.7%)	93.0 (28.0%)	

* : 소련수역5만톤과 이란수역 1만톤의 합으로 추정한 것임

자료 : 수산청 국제협력과

반면 북한의 경우 이에 관한 자료는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의 원양어업이 주로 오크호크해, 카마카 근해를 중심으로 한 북양트롤어업에 치중하고 있는 것에서 미루어 짐작하여 북한의 러시아 수역의 어획 쿠터량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추정해 볼수는 있을 것이다. 1977년 체결된 朝·蘇 어업 협정에 의하면 북한측의 어획 쿠터량은 20만톤이었다. 이에 따라 북한어선 16척이 구소련수역에서 조업하게 되었으나 소련측이 배정한 수역이 북부 사할린, 북부 쿠릴 태평양수역이었으므로 어장성이 나빠 어획실적은 10만톤을 밑돌았을 것으로 축축된다. 더구나 1983년부터 소련은 등량주의를 엄격히 적용, 러시아 어선이 북한수역에서 잡는 어획량(정어리 등 3만톤)만큼만 북한어선의 입어를 허용

南北韓 共同漁業政策의 課題

하고(무상쿼타) 나머지는 북한노동자의 시베리아 벌목작업 정도에 따라 그 쿠터량(유상쿼타)을 줄여 왔기 때문에 1989년의 경우 총어획쿼터량 7~8만톤에 어획실적도 5만톤에 불과할 것으로 추측된다. 참고로 1991년도의 북한의 러시아수역 쿠터량은 무상 3만톤+유상 3만톤 이었으며 총 어획실적은 2만 5천톤이었다. 구소련수역외에도 북한은 1982년 이란 회교 혁명정부와 어업협정을 체결, 1990년 경까지 북한어선 7척이 이란수역에서 조업하였고 연간 어획량은 약 1만톤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표-5>에서 보는 바와같이 북한의 총수산물생산중 연근해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3.2% 정도이고 원양어업의 비중은 약 2.7%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근해 어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넘한이 북한에 비해 약 2배 정도가 되고 있으나 총수산물 생산액중 차지하는 비중은 서로 비슷함을 알 수 있겠다. 하지만 북한의 해면어업의 연근해어업에의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미루어보아 북한의 연근해 어업자원의 보존상태가 남한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나. 어선세력

현재 북한의 어선세력에 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수산연감에 따른 1988년도 남북한간의 어선세력을 비교하면 <표 6>과 같다.

<표 6>		남북한간의 어선세력(1988년 기준)		단위 : 천척, %
		북 한(A)	남 한(B)	배 울(B/A)
척 수		30	99	3.3
동력선		21	78	3.7
동력화율		70(%)	79(%)	-

자료 : 「수산연감」(1989)

어선척수로는 남한이 북한의 3.3배, 동력선척수로는 3.7배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이것을 가지고 남북한 어선 1척당 생산성을 비교해 보면 <표 7>과 같다.

<표 7>		남북한의 척당 생산성(1988년 기준)		
	단위	북 한(A)	남 한(B)	배 울(B/A)
수산물총생산	천톤	2,146	3,209	1.5
척 수	천척	30	99	3.3
척당 평균 생산성	톤/척	72	32	0.44

자료 : 「수산연감」(1989)

물론 총톤수와 어업종사자 인구만 알 수 있다면 톤당 생산성 및 1인당 어업생산성을 산출할 수 있고 이를 비교하면 보다 의미있는 분석을 얻을 수 있겠지만 척당 평균생산성 그 자체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척당평균생산성은 남한이 북한의 40%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남한이 북한보다 양질의 노동력과 높은 어업기술수준을 갖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건데 남한의 어선세력이 자원보유량에 비해 과다하거나 또는 북한의 어업자원 현황이 상대적으로 남한보다 양호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수산경영론집

다. 수산물의 수출입

FAO 통계에 의하면 북한 수산물의 수출실적은 알려져 있으나 수입은 실적이 거의 없어서인지 자료가 없다. FAO 통계에 의거한 1987~1989년 남북한 수산물 수출현황은 <표 8>에서와 같다.

어패류수출이 총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남한과 북한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절대액에 있어서는 남한이 북한보다 20배 이상임을 알 수 있다.

<표 8> 남북한의 총수출액대비 어패류 수출액의 비중 단위 : 億 US\$

	북한	남한	배율					
년도	총수출(A)	수산물수출(B)	B/A	총수출(C)	수산물수출(D)	D/C	C/A	D/B
1987	16.7	0.616	3.7%	462.4	15.4	3.3%	27.7	25.0
1988	20.3	0.708	3.5%	596.5	17.8	3.0%	29.4	25.1
1989	19.5	0.682	3.5%	614.1	15.4	2.5%	31.5	22.6

자료 : FAO, 「Yearbook of Fishery Statistics」, 1989, Vol. 69 농림수산부, 「농림통계연보」, 1992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출물량면에서는 남한이 북한의 약 20배 정도이나 총생산량에서 수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수산물의 총생산량중 수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표 9>에서와 같다.

<표 9> 남북한의 총수산물생산량 대비 수출량의 비중(1986~1988 : 3년간 평균) 단위 : 천톤. %

	생산량(A)	수출량(B)	B/A(%)
북한	1,700,000	36,771	21.6
남한	2,902,298	709,144	24.4

자료 : FAO, 「Yearbook of Fishery Statistics」, 1989, Vol. 69

<표 10> FAO 통계에 의한 최근 3연간 남북한 수산물 품목별 수출동향 단위 : 1,000 US\$

구 분	북한			남한		
	1987	1988	1989	1987	1988	1989
선어,냉동어	8,610 F (14.0%)	15,820 F (22.3%)	13,215 F (19.4%)	740,941 (48.1%)	843,678 (47.3%)	778,522 (50.6%)
건어,염장,훈제품	11,656 F (18.9%)	4,580 F (6.5%)	6,350 F (9.3%)	41,037 (2.7%)	33,977 (1.9%)	30,932 (2.0%)
패류,갑각류	33,326 F (54.1%)	40,060 F (56.6%)	35,350 F (51.9%)	490,387 (31.8%)	537,358 (30.1%)	423,921 (27.6%)
어류통조림	4,585 F (7.4%)	5,065 F (7.2%)	9,595 F (14.1%)	131,264 (8.5%)	175,277 (8.5%)	166,058 (9.8%)
폐류,갑각류	3,215 F (5.2%)	3,620 F (5.1%)	3,085 F (4.5%)	134,064 (4.5%)	190,30 (8.7%)	136,901 (10.7%)
통조림	-	-	-	75 (0.00%)	168 (0.00%)	56 (0.00%)
유지						
어분	160 F (0.3%)	1,690 F (2.4%)	580 F (0.9%)	2,304 (0.1%)	3,302 (0.2%)	2,018 (0.1%)
합계	61,552 F	70,835 F	68,175 F	1,540,072	1,784,068	1,538,408

자료 : FAO, 「Yearbook of Fishery Statistics」, 1989, Vol. 69

F : 추정치를 의미함.

南北韓 共同漁業政策의 課題

남북한의 품목별 수산물 수출실적은 <표 10>에서와 같다.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수산물의 수출은 선어.냉동어가 거의 수출의 50%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패류.갑각류가 30%를 차지하는데 비해 북한의 경우 패류.갑각류의 수출이 압도적으로 많고(55% 정도) 선어.냉동어의 비중은 20% 내외임을 알 수 있겠다.

북한의 수산물수입에 관한 자료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데 이는 외화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당국이 수산물을 수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실적이 거의 없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참고로 남한의 최근 3년간 수산물의 용도별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용도\년도		남한의 수산물의 용도별 수입현황			단위 : 1,000 US\$
		1988	1989	1990	
	수출용원자재	134,909 (46.3%)	142,729 (44.4%)	168,623 (45.8%)	
내 수 용	공동어업사업물 관광업소용식자재 합작어획물 내수용수산물	84,992 (29.1%) 3,018 (1.0%) 7,402 (2.5%) 61,325 (21.0%)	114,613 (35.6%) 2,133 (0.7%) 8,563 (2.7%) 53,572 (16.7%)	63,006 (17.1%) 27,650 (7.5%) 4,413 (1.2%) 104,403 (28.4%)	
	계	291,646 (100.0)	321,610 (100.0)	368,095 (100.0)	

자료 : 한국수산회 「수산연감」(1991)

단, ()은 구성비

남한의 수산물 수입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1990년의 경우 3억 7천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용도별로는 수출용 원자재와 내수용이 각각 45%, 55% 정도의 일정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의 상승으로 고급어류에 대한 수요증가를 반영하듯이 90년에 들어와서는 내수용중 관광업소용 식자재의 수입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라. 수산물의 실질공급현황

FAO에 근거한 1986~88간의 3년 평균 남북한의 수산물 실질공급현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한의 실질공급량은 북한보다 약 2.5배정도에 이르고 있으나 인구가 2배이상 됨으로써 1인당 공급량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하나 특기할 것은 북한의 비식용소비로 사용되는 수산물의 양이 절대액에 있어서나 생산량 대비 비중에 있어서나 남한보다 월등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수산물로부터 공업용기름을 채취하는 등의 공업원료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 12> 남북한의 수산물 실질공급(1986~88년간 3년평균)

	생산량 (톤)	수입량	비식용 소비량	수출량	실질 공급량*	기준인구 (천명)	1인당공급량 (Kg)
북 한	1,700,000	0	790,072	36,771	873,156	20,608	42.4
남 한	2,902,298	275,639	410,373	709,144	2,066,201	41,658	49.6

* 실질공급량=(생산량+수입량-비식용소비량-수출량)으로서 실질소비량으로 간주해도 별 무리가 없음

자료 : FAO, 「Yearbook of Fishery Statistics」, 1989, Vol. 69

마. 남북한 수산업의 향후과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0년대 후반기에 들어옴에 따라 남북한 모두 수산물생산량의 연평균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고 특히 북한의 경우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추세는 90년대에 들어오면서 더욱 뚜렷해지고 있어 남북한 모두 절대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 이는 어선이 대형화되고 어로장비도 현대화되어 어획성능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실적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은 생산성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북한의 경우 90년대에 들어오면서 대내외적인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말미암아 에너지 난이 가중되어 연료공급의 부족으로 출어기회가 줄어든 탓도 있겠지만 생산면에 있어서의 신장율의 둔화는 모두 동일한 현상으로 보여진다. 반면 소비면에서는 대조적으로 큰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자료가 없어 남한의 자료만 고려해 보더라도 수산물의 국민 1인당 소비량은 80년대의 27.0Kg, 90년대의 35.9Kg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수산물의 수입량도 80년대 후반에 연평균 30%가 넘는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이는 수산물 수입개방화추세와 함께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북한 특히 남한의 경우 어업생산량의 정체적인 추세와 어업생산성의 감소를 극복하고 어떻게 수산업의 지속적이고도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연근해어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남북한 당사자가 모두 연근해어업 자원보호와 관리를 위해 협력이 불가피한 상황에 와있는 만큼, 향후 적극적인 교류협력이 요청된다.

특히 북한의 경우 부족한 외환을 수산물수출을 통하여 보전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고 또 남한의 경우 수산물수입의 계속적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양국의 수산물 교역은 서로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유익한 교류가 아닐 수 없다.

III. 국제수산업협력유형과 EC 공동어업정책

1. 국제수산업협력의 제유형²⁾

현행 어업자원이용을 두고 국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협력형태는 대략 다음의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잉여원칙(surplus principle)

연안국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안에 있는 어업자원중 자국이 이용하고 남는 잉여부분을 다른 나라가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 형태라 볼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자원을 보유하였지만 개발할 능력이 부족한 어업후진국 또는 어업개도국이 어업선진국으로부터 일정한 반대급부(입어료 또는 기술이전)을 받고 자신의 잉여자원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면 과거 북한과 일본간의 어업협력은 이 형태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잉여원칙은 개발도상국이 자국이 처해있는 경제여건상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의 어업협력으로서 연안국의 경제상황이 개선되어 자국

2) 長谷川彰 “200海里體制以の國際漁業關係の變容,” 「漁業經濟研究」, 第31卷 第2·3合併號, Vol. 31, 1987.

의 직접조업으로 보다 큰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외국어선의 조업을 금지시킬 수 있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

사실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처음에 자국의 관할수역안에서 일정쿼터를 정해 입어료를 받고 타국의 조업을 허용하다가 이제 여러가지 구실로 외국의 조업을 금지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잉여원칙에 의한 국제협력은 한시적 형태로 존재할 수 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상호주의원칙(reciprocal principle)³⁾

어업선진국과 어업선진국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어업협력 방식으로 일본과 구소련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어업협력 형태가 그 예이다.

이러한 형태의 어업협력이 이루어지는 이유로는 양당사국들이 조업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자원도 상호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으나 특정자원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나 생산성에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가령 일본은 명태나 꿩치, 오징어를 구소련 수역에서 어획하고 그대신 구소련은 등등한 양의 정어리나 고등어를 일본수역에서 조업하고 있다. 이는 양당사국이 선호하는 어종이 다르고, 또한 경제체제의 차이로 인하여 물물교환을 원칙으로 하는 상호입어의 국제관계 때문에 성립한 것이다.

다. 합작사업원칙(joint – venture principle)

합작사업형태의 어업협력은 자본과 기술이 풍부한 어업선진국은 상대적으로 노동력이나 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자신의 생산요소를 이동시켜 안정적으로 원료를 조달하고 기존의 경영을 유지하고자 하며 또한 자원보유국으로서는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수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고용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어업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상황하에서 이루어진다. 일본의 아시아와 태평양 연안국가들과 어업개발합작사업은 이것의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라. 축출원칙(phase – out principle)

미국은 당초 국제해양법이 규정한 잉여원칙과 외국어선의 실적존중정책을 취하다가 해당국가에 대한 어획쿼터량을 미국의 재량으로 하였다가 1988년 이후 어획할당량을 없애버리는 정책을 채택한 바 있다. 즉 연안국이 입어료 수입보다 자국의 직접조업으로 보다 큰 이익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판단하에 외국어선의 조업을 금지시키는 형태를 지칭한다.

마. 공동이용원칙(pond principle)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으며 문화·경제적 수준이 유사한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자원관리형 어업협력으로서 1960년대 미국과 카나다간의 동태평양 연안의 광어자원의 공동이용제도 이래 1983년 EC 가맹국들이 채택한 공동어업정책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자세히 언급하기로 하지만 가맹국간의 어업수역을 공동수역으로 하고 가맹국의 모든 어업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상기논문에서는 等量主義라고도 명명함.

이상과 같은 형태의 국제간의 어업협력방식은 당사국들의 수산업의 발전단계나 경제체제 및 상호 인접성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국제간의 어업협력은 잉여원칙이나 상호주의와 합작사업의 단계를 거쳐 공동이용 형태나 축출의 원칙이 지배되는 형태로 진전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EC 공동어업정책⁴⁾

EC의 공동어업정책의 주요내용은 첫째 어업수역으로의 자유접근(free access to fishing zone), 둘째 어업자원의 보존과 관리(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fishing stock), 세째 공동시장의 조직화(organization of the market), 네째 구조조정정책(structural programmes and research), 다섯째 대외협력(international relationship)의 5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어업수역으로의 자유접근

EC 가맹국의 전어민에 의한 EC 수역으로의 접근은 원칙적으로 자유롭다는 것으로 EC 어업구조 정책을 수립한 1970년 규칙에 의해 확립되었다.

북해연안으로부터 200해리내 그리고 지중해 및 발틱해에서는 협소한 범위내에서는 공동체 수역은 모든 EC 어민에게 개방된다. 이에 대한 예외는 가맹국은 연안으로부터 12해리 내에서는 자국선과 전통적으로 권한이 있는 제3국선이 조업할 수 있다. 또 다른 예외로서 Orkney 제도 및 Shetland 제도 주변수역에서는 12해리를 벗어나는 수역에 있어서도 남획의 가능성이 있는 어종을 대상으로 하는 영국·프랑스·서독·벤기에의 대형선에 대해, 허가제에 의한 공동체의 통제가 실시된다. 그 적용기간은 20년이고 10년뒤에 검토할 수 있다.

나. 어업자원의 보존과 관리

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조치는 1983 규칙에 의해 채택된 바 있다. 이를 위해 EC는 총허용 가능어획량(TAC : Total Allowable Catch)의 연도별고정과 기술적인 자원보존조치 및 감시 및 모니터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EC 이사회는 매년 어획량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종어종 및 관련어종에 대해 총허용어획량, 공동체의 이용가능한 쉐어, 이 쉐어의 가맹국간의 할당량을 정한다. 그리고 가맹국간의 배분방식은 전통적인 어업형태, 어업의준도가 높은 지역의 필요성(예컨대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및 북동잉글랜드) 그리고 제3국의 200해리 어업수역확대에 의한 가맹국의 어획량손실 등의 세가지 기준에 의해 시행되게 되어있으나 1983년 이후 각 가맹국은 원칙적으로 어업활동의 안정을 위하여 각 스톡의 고정된 비율을 할당받고 있다.

TAC와 쿼타시스템을 각 회원국의 연도별초과 및 부족분의 이월제도(carry - over)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회원국간의 쿼타교환은 가능하다.

둘째, 해양생물자원 특히 稚魚의 보호를 위하여 각종의 기술적인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4) EC commission, The common fisheries policy, March. 1991., 참조

는 그물눈(mesh)의 크기, by – catch의 수준, 양류어(landed fish)의 최소크기의 설정, 특정지역에서의 어획제한, 특정시기의 제한 및 특정어구의 사용제한 등이 포함된다.

세째, EC 위원회는 EC 어민들이 공동체의 규칙과 규정 특히 어획쿼터 및 자원보존 의무 준수 및 EC 회원국들이 자신들의 어항과 어업수역에서의 어업행위의 조정 및 감독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20명의 감시관을 회원국의 어항에 파견하거나, EC 수역에 감시선을 보낸다. 여기서 자원보존의무를 소홀히 한 가맹국은 유럽사법법원에 호출된다.

이외에도 EC 각국어선의 선장은 TAC 혹은 쿼터의 적용을 받는 모든 어종의 어획량에 대한 항해일지(log book)을 작성해야 하며 이 기록의 사본은 어획물이 양육되는 공동체 관계당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다. 공동시장의 조직화

어민소득 향상과 양질의 수산물의 충분한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시장의 조직은 1970년 규칙이 제정된 이후 어업환경 및 시장의 변화에 수차례의 수정을 거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아케팅기준에 관한 내용으로서 공동마아케팅의 기준으로서 선도의 등급과 크기의 등급을 정하고 있다.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 검사가 실시되고 가맹국은 기준과의 합치여부를 체크받기 위해 산품을 제시해야 된다. 또한 이 검사는 운송을 포함한 모든 마아케팅 단계에서 실시되고 있고 기준에 위배되면 가맹국은 벌과금을 지불해야 한다. 현재 EC 생산품의 80%, EC 수입품의 모두 80%가 이 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다.

둘째, 생산자 조직에 관한 내용으로서 EC의 생산자 조직은 어업의 합리적인 수행, 매매조건의 개선 및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생산자의 주도하에서 조직된다.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생산자 조직은 EC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며 이로부터 3년간 공동규칙의 채택으로 야기되는 비용을 EC로부터 지원받는다.

현재 약 150개의 생산자 조직이 있으며 이는 EC 총어업생산의 약 60%를 담당하고 있다.

세째, 가격시스템에 관한 내용으로서 EC 이사회는 어로시기의 개시전에 기준 시장가격을 기초로 대부분의 어종을 위한 지도가격(guide price)을 정한다. 이 가격은 지난 3년간의 대표적인 어항 혹은 도매시장에서 이루어진 가격의 평균을 기초로 한다. 또한 수요와 공급, 어민의 수입 그리고 소비자의 이해관계를 감안하여 지도가격을 정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 가격은 최저판매가격이 되며 철수가격(withdrawal price)의 기초가 된다. 생산자 조직은 그들이 그들의 회원으로부터 공급받았으나 더이상 팔 수 없는 산품의 철수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가격은 지도가격의 90%를 넘어서는 안되고 최소한 70%이어야 한다. 이 가격은 EC의 수준에서 고정적이지 않고 생산자 조직이 결정한다. 생산자 조직은 시장으로부터 철수된 산품의 양에 따라서 회원어민에게 보상금을 공여한다. 생산자 조직은 판매수량에 의거한 기여금으로 형성된 개입자금(intervention fund)을 만들어 보상시스템을 운영한다. 보상금은 정상적인 조건하에서 판매용으로 출하되었으나, 구매자를 찾지 못한 산품에 공여된다.

그러나 개인별로 공여되지 않고 먼저 생산자 조직에게 공여된 뒤 다시 재배분된다.

한편 시장으로부터 철수되는 양이 증가할수록 보상수준이 감소하는 EC 지원메카니즘도 존재한다. 이것의 도입으로 인해 시장으로부터의 철수량이 1980년에서 1988년 사이에 15만 톤에서 5만 톤으로 감소했다. 철수된 어획고의 손상을 막기 위해 보관보조금(storage subsidies)이 특정산품에 공여되고 있다. 이는 주로 정어리(sardin)와 참치(tuna)의 생산업자에게 적용되고 있다.

네째, 대외무역정책에 관한 내용으로서 EC 수산물 수입량 중 약 50%가 비가맹국으로부터 들어오고 있다. 주요 수산물의 국경인도가격(Free – at – frontier price)이 가맹국이 기록한 가격을 기초로 결정된다. 한편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에서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참조가격(reference price)을 주요수입품에 대해 설정하고 있다. 만일 국경인도가격이 참조가격보다 최소한 3년 연속으로 낮거나 대량으로 제3국에서 수입되면 수입할당량을 포함하는 다양한 규제조치를 실시한다.

EC 이사회는 1990년 공동체어민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수산가공업자들이 경쟁가격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누진적인 관세할당제도를 도입하였다. 한편 대량의 수산물수출을 위해 세계시장가격과의 차액을 보조하는 조치를 취하고도 있다.

라. 구조조정정책

구조조정정책의 주요내용은 신규어장개발과 어업·양식업의 재편성 및 근대화, 과다 어업능력의 삭감이다. 이러한 구조조정을 위해 EC 위원회는 신어선의 구입 혹은 건조, 기존 어선대의 근대화, 양식설비의 근대화, 수산자원의 보호, 수산품의 개선과 수산물의 1차 매도조건을 개선시키는 어항의 개발 등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가능 어획량의 소멸과 신어업기법의 개발로 인해 EC는 기존 어선대를 재구축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EC는 어선의 건조 혹은 근대화를 위한 각국별 지원제도를 검토하며 이 지원제도가 선복량의 증대 혹은 경쟁왜곡을 초래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예컨대 1987~91년동안 기존가맹국들은 톤수로 3%, 엔진파워로는 2% 만큼의 선대를 삭감코자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EC 위원회는 가맹국적으로 운항되는 선박의 등록을 중앙집중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왔고 또한 EC는 공동체선박의 규모와 특성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확보를 위해 공동체선적제도(community shipping registration system)를 제안하고 있다.

그밖에 EC는 어획노력의 관리, 양식업, 수산가공업 및 어획기법에 관한 과학적이고도 기술적인 연구분야에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다.

마. 대외협력

EC 가맹국은 국제어업교섭을 행할 권한을 공동체에 위임하고 있으며 1977년부터 제3국어선의 EC 경제수역내에서의 조업은 EC와 제3국간의 협정에 의거한다. 따라서 협정에 의해 EC 가맹국이 제3국의 잉여분에 대해 접근하거나 또는 EC 공동체수역내에서의 TAC의 잉여분에 대해 제3국의 접근허용권은 모두 EC가 가지고 있다.

IV. 남북한 단계별 수산업협력방안

1. 남북한 경제통합의 제단계

수산업부문에서의 남북한의 경제협력의 전개방향 역시 중·장기적인 남북한 경제통합방안의 테두리안에서 모색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일반적인 남북한 경제통합의 시나리오가 먼저 전제될 필요가 있다.

경제통합이론에 따라 남북한의 경제통합 역시 자유무역지대→관세동맹→공동시장→경제동맹→완전한 경제통합의 발전단계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유시장경제와 사회주의경제라는 상호 이질적인 체제를 갖고 있는 남북한 경제통합에서는 체제전환과 경제통합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으로 경제통합의 일반적인 논의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따라서 상호이질체제간에 서로 적응하면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며 양체제의 장단점을 비교검토하면서 민족의 장래에 보다 적합한 혼합체제를 모색하는 등의 충분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남북한간의 경제통합에 관한 논의는 이상과 같은 충분한 여건조성기를 거쳤을 때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상호이질체제간의 경제통합의 전형인 동서독의 경제통합과정은 남북한 경제통합의 전개과정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바 앞으로 남북한도 동서독의 경우와 같이 간접교역·직접교역·경제협력·경제통합의 단계로 경제통합이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향후 남북한의 경제통합이 간접교역과 직접교역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제교류기를 지나서 상호편의 제공, 산업협력, 합작사업 및 공동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제협력기를 거쳐 자유무

<표 13> 남북한 경제교류 협력 모형

구 분	단 계	내 용
여 교류기 건 조 성 기	1. 간접교역단계	○ 제3국을 통한 물적교류 ○ 다자간 협력 방안 모색
	2. 직접교역단계	○ 무역협정 체결하에 본격 물적교류 ○ 후기 : 인적교류(경제인, 기술자) 시작
경 제 협 력 기	1. 상호편의 제공단계	○ 수출입업무 대행 등 의회화득 지원
	2. 산업협력 단계	○ 산업간 수직적 분업체계 형성
	3. 합작사업 단계	○ 초기 : 장단기 신용차관 제공 ○ 후기 : 경공업 자원개발에의 직접투자
	4. 공동사업 단계	○ 사회간접자본(도로, 철도, 통신시설)등 공동건설, 공동이용
남 북 연 합 기	1. 부문별 경제통합	○ 실익이 있으면 조정이 가능한 부분 선정 (예 : 철강, 석탄)
	2. 자유무역 지역형성	○ 관세철폐, 무역제한 철폐
	3. 관세동맹	○ 공동관세 정책
	4. 남북한 공동시장	○ 시장상호개방 ○ 상품별 생산요소 자유이동
	5. 경제동맹	○ 인력, 재화와 서비스의 완전이동
	6. 통화동맹	○ 단일통화 창출 ○ 공동체 중앙은행 설립 ○ 경제정책 통일
	7. 사회동맹	○ 노동관계 ○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통일국가

자료 : 이상만(1992)

수산경영론집

역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등의 일련의 전형적인 경제통합기를 통하여 통일국가에 이른다는 전제하에 논의를 계속할 것이다<표 13참조>. 따라서 수산업부문에서의 남북한간의 교류 협력방안도 크게 경제교류기와 경제협력기와 경제통합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남북한 수산업부문협력의 단계별 과정

남북한 수산업부문의 협력방안은 남북한 경제통합단계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밖에는 없지만 총체적으로는 현행의 국제어업협력의 제 유형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수산업협력방안도 크게 직간접 수산물교역에서 더 나아가 상호주의법칙이나 잉여원칙, 합작원칙 또는 공동이용원칙의 형태를 취하거나 이 중 몇가지 원칙을 복합한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사료된다.

이것을 경제교류기 - 경제협력기 - 경제통합기의 단계로 나누어 본다면 경제교류기에는 역시 남북한이 각자 생산한 수산물을 제3국을 통한 간접교역 또는 직접교역 형태로 경제교류를 진전시켜나갈 수 있으리라 본다. 경제협력기에는 잉여원칙하에 북한의 특정 어로수역에 한해 남한이 입어료를 지불하고 일방으로 입어하는 방안 또는 상호주의원칙에 입각하여 남북한의 특정 어로수역에 쌍방이 동등히 획물량의 상호입어를 실시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좀더 나아가서 합작원칙에 입각하여 합작사업을 통해 우리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과 원료를 결합하는 형태의 수산업협력이 가능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경제통합기에는 공동이용원칙에 입각한 공동어업정책의 시행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에 관한 구체적 시행 방안은 다음과 같다.

가. 경제교류기의 수산업협력방안

1) 수산물의 직간접교역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8~1991년까지 북한수산물 반입승인현황을 금액면에서 살펴보면 경이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1991년 기준으로 보면 총반입승인금액중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6%에 달하고 있으며 4년간 누계를 보면 약 14%에 이르고 있다. 특히 냉동명태의 경우 매년 수입금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91년에 들어오면서 수입품목도 다양해지고 있는 등 남북한의 물자교류에 있어서 수산물이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북한이 제의한 교역대상품목을 보면 북한의 판매회망품목에 명태와 같은 수산물이 있고 우리 역시 수산물의 수입이 매년 1억불 이상 이르고 있어 북한으로부터의 수산물반입은 남북한 공히 교역의 실익이 큰 부문이다. 따라서 수산업부문에서의 물자교류는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교역형태도 북한의 어려운 외화사정상 당분간은 구상무역방식으로 진전될 수 밖에 없으리라 예견된다. 한편 구상무역방식은 북한당국을 포함한 사회주의 무역의 기본원칙인 자주.호혜.평등의 무역 관계에 적합한 형태이므로 북한당국이 쉽게 교역에 응할 수 있는 이점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은 남한으로부터의 반입회망품목인 남한의 남해어족과 북한의

南北韓 共同漁業政策의 課題

북한수산물 품목별 반입승인현황(88~91)					단위 : 1,000 US\$
품목 / 연도	88	89	90	91	계
냉동홍어	-	-	245	4,720	4,965
냉동오징어(류)	-	-	-	2,435	2,435
냉동꼴기	-	-	-	40	40
냉동문어	-	-	-	32	32
건오징어	-	-	-	2,435	2,435
복어류	-	-	-	965	965
냉동조기	-	-	-	6,380	6,380
냉동가자미	-	-	-	150	150
건명태(북어)	-	-	-	438	438
냉동명태	233	112	1,790	7,570	9,705
염장명란	-	90	-	80	170
건해삼	-	-	-	18	63
콜뱅이	-	-	-	330	330
냉동바지락	-	-	-	145	145
건바지락	-	-	-	71	71
건소라	-	-	-	5	5
냉동소라	-	-	-	5	5
냉동바다가재	-	-	-	2	2
냉동도루묵	-	105	-	-	155
계(A)	233	357	2,080	25,281	28,491
전품목 반입승인(B)	1,037	22,235	20,354	165,996	209,622
배율(A/B)	22.5(%)	1.6(%)	10.2(%)	15.6(%)	13.6(%)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요북한경제지표」, 1992

<표 15> 남북한이 제의한 교역대상 품목

남한측		북한측	
구입희망품목	판매가능품목	구입희망품목	판매가능품목
무연탄, 철광성, 선철, 연괴, 아연괴, 규사, 고철 등 공업제품. 명태, 누에고치, 팔, 옥수수, 피마자 등 <u>농수산품</u> . 기타한약재.	철강 및 제품, 동 및 제품, 알미늄 제품 등 금속제품. 가정용, 공업용 재봉기. 경운기, 승용차, 2륜자동차 등 기계류. 시계, 천연색 TV, 음향기 등 전기전자제품, 섬유원료, 섬유직물, 담요 등 섬유류. 기타 고무벨트, 피아노, 황산가리, 정제그라세린 및 의약품.	철강재, 중석광, 납사, 섬유 등 공업제품. <u>남해어족</u> , 소금, 감귤 등 농수산물.	철광석, 석탄, 마그네샤크링카, 일반공작 기계, 채취설비 등 공업제품. 명태, 쌀, 강냉이 등 농수산물.

자료 : 국토통일원

명태 등과 바로 물물교환형태로의 교역도 있을 수 있으며 또는 남한의 북한수산물의 반입의 대가로 소비재 중심의 공산품을, 북한의 남한수산물수입의 대가로 원자재를 제공하는 형태의 구상무역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극심한 외화부족으로 고통받는 북한이 중요한 외화가득원이 되고 있는 수산물을 수산

물로 물물교환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하지만 수산물과 기초 생필품 중심의 공산품과의 물물교환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남북한간의 수산물직교역의 경우 북한의 외화부족과 북한으로부터 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제약으로 교역 확대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양측 수산업 간 협력이 보다 상호보완적 실익이 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나. 경제협력기의 수산업 협력 방안

1) 북한수역에의 입어방안(입어료 지불방안)

산업간 협력기에 접어들어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남한 어선이 북한의 관할수역에서 쌍방이 합의한 입어료를 지불하고 어획하는 방법이다.

이미 남획상태에 와 있는 남한측으로서는 어로장비, 기술수준 등의 열세 및 연료부족 등으로 북한측에서 어획하지 못하는 임여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좋고 한편 외채상환 및 외화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측으로서는 임여자원을 외화조달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 상호보완적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방안의 선례로서는 1977년 최초로 체결된 이래 매년 2년마다 개신하여 온 朝日漁業民間暫定合意에 의한 일본의 북한수역에의 입어의 경우가 있다. 동 협정에 의하여 최초로 입어료 지불형태의 어업협력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북한이 일본에 대해 개방하는 어종은 연어, 오징어, 게 등으로 하였으며 명태의 경우 북한어선이 잡은 명태를 일본의 공모선이 해상에서 인수하도록 하였다(구매물량은 5만톤이내에, 구매단가는 톤당 \$176). 설정된 입어료 수준은 오징어 \$66, 연어 \$230이었고 어종별 규제방식은 오징어와 연어의 경우는 어기와 어선척수를 규제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⁵⁾. 92~93 기

<표 16> **북한수역내에서의 일본 어업실적** 단위 : 톤, 백만엔, 척

		1977	1978	1979	1980	1981 '82(6월말 까지)현재	1983	1984 (11월-)	1985	1986	
오징	어획량	18,000	22,000	25,605	36,929	7,787	3,848	-	2,079	13,082	3,976
어채	어획금액	9,000	9,900	13,302	13,110	3,648	2,100	-	809	5,233	2,246
낚이	조업척수	1,800	1,500	1,337	1,542	1,535	355	-	278	623	371
붉은	어획량	4,860	3,500	3,424	3,510	3,145	1,313	-	-	936	692
대게	어획금액	892	620	562	554	480	228	-	-	194	151
통발	조업척수	18	18	17	21	20	18	-	-	20	16
기타	어획량	800	600	1,881	1,808	1,918	925	-	-	256	626
	어획금액	460	380	945	558	1,439	783	-	-	212	229
	조업척수	391	388	386	285	228	180	-	-	93	113
합계	어획량	19,900	26,100	34,864	42,33	112,825	6,084	-	2,079	14,274	5,294
	어획금액	9,660	10,860	14,885	14,324	5,076	2,900	-	809	5,639	2,626
	조업척수	2,249	2,000	1,789	1,947	939	626	-	278	736	500

자료 : 「漁業協定概要」, 日本水産廳, 1988.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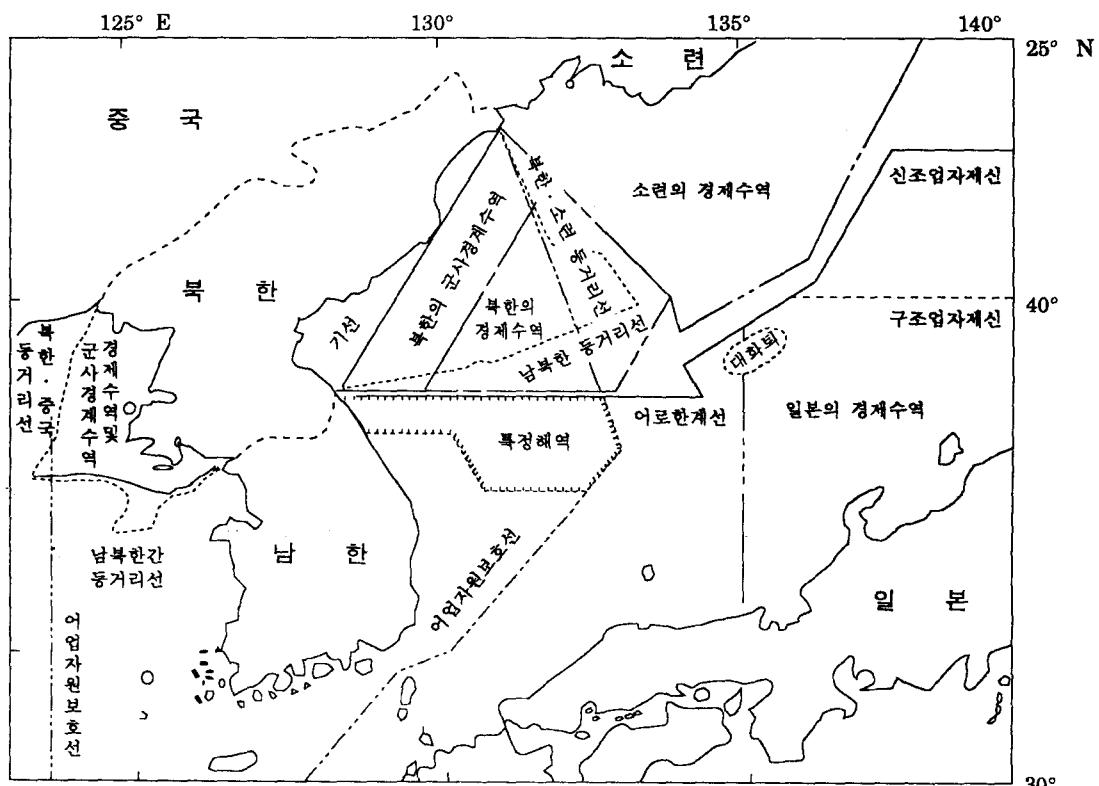
5) 이병기, 1990, pp. 83 85 참조.

간까지 연장합의한 동 협정의 주요내용은 오징어채낚이 어획 할당량이 4,500톤, 유자망연승어획량이 450톤⁶⁾이며 입어료는 오징어가 톤당 \$155, 유자망과 연승으로 잡은 연어가 톤당 \$250으로 하기로 하고 있고 입어료는 미리 거치하여 북한의 다시마 가공공장정비에 사용하기로 하고 있다. 참고로 77년부터 86년까지의 동협정에 의한 북한수역에서의 일본어업실적은 <표 16>과 같다.

이상과 같은 일본의 대북한 어업협력경험은 차후 남북한간의 입어료지불방식을 통한 어업협력을 추진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많다. 그 중 몇가지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92·93년 북한과 일본이 합의 결정한 어종별 입어료에 관한 사항은, 우리와 북한과의 입어료 협상시에 우리업체의 수익성을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남북한 협력정신을 살릴 수 있는 적정 입어료 수준을 결정하는 데에 주요한 지침의 하나가 될 것이다.

둘째 북한 동서해의 군사경제수역 내에서의 입어를 허가 받도록 해야 한다(<그림 1> 참조). 일본과 같이 군사경제수역 외에서만 조업허가를 받는다면, 서해전역이 군사경제수역에 속해 버리기 때문에 홍어, 조기, 가자미, 게 등을 어획할 수 있는 서해어장이 완전히 배제된다. 뿐만 아니라, 동해에 있



<그림 1> 한반도 주변의 북한·일본·러시아의 경제수역

자료 : 이병기(1990)

6) 어획량은 90·91 기간에 비해 모두 30% 증가되었음.

어서도 명태의 주요어장의 대부분이 이 군사경계수역 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수역을 배제한 어떠한 협력방안도 수익성 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북한이 정치적, 군사적 이유로 군사경계지역을 유지하고자 하더라도, 쌍방이 남북한 화해정신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우리업체들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북한으로부터 군사경계수역 내에서의 입어를 허가 받아야 한다.

세째 기본적인 입어료 지불 뿐만 아니라, 북한 수산물의 수입, 수산가공공장, 조선소, 양식장 및 어항 등의 생산기반시설의 건설에 재정적, 기술적 지원 등의 부가적인 유인도 남한측이 함께 제공해야 한다. 북한이 일본과의 합의서를 폐기한 주요이유 가운데 어로 기술 및 어업 기자재 도입에 일본이 비협조적이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부분의 연안국들이 그렇듯이 북한도 단순히 입어료만 받고 외국 어선의 입어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수산업 진흥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어선의 입어를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방안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입어료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가적인 지원책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네째 북한이 수산자원 보존과 관리를 위해 제정한 제규정들, 예를 들어 어획량, 어선규모, 어기제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남북한간의 상호 신뢰감을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북한과 같은 연안개발도상국들의 수산업정책의 경향을 분석해 보면 입어인정은 자국 수산업 진흥을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활용하고 있으나 보다 장기적으로는 입어방식보다 투자유입, 고용창출, 수출증대, 어로기술이전 등에 유리한 합작투자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안개발국들의 수산자원 관리정책의 발전단계를 고려해 볼 때, 입어방식은 장기적인 협력방안으로 추천하기 어려우며, 이보다 합작투자 방식에 의한 협력이 더 바람직하리라고 예상된다.

2) 상호입어 방안⁷⁾

상호입어형태에 의한 어업협력은 구소련과 일본간의 어업협력에서 보듯이 교환의 기본을 등가가치 위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와 동량가치 위주로 하는 사회주의 체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잠정적 협력형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등한 무역관계와 호혜평등을 주장하는 북한당국으로서는 이 방안과 같은 어업협력형태에는 큰 거부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더군다나 남한측으로서는 북한의 명태에 대한 수요가 크고 북한측으로서는 남해어족에 대한 수요가 있어 서로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이점도 존재함으로서 합의의 여지는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상호입어가 허용되는 수역의 범위, 대상어종과 어로방법, 어선의 규모와 척수, 어획량, 협정위반에 대한 단속절차, 존속기간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하다⁸⁾. 만일 이 방안이 실시되어 남북한간의 어업협정체결이 요구될 시에는 현행의 일본과 구소련의 어업협정(日ソ地先沖合漁業協定)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7) 이병기 교수의 남북한 공동어로수역방안(1990)도 이와 같은 형태의 어업협력으로 볼 수 있다.

8) 이병기 교수(1990)는 이 합의의 전제조건으로써, 첫째, 북한측의 기선을 재조정하여 국제법상의 원칙에 맞도록 해야 한다. 둘째, 북한측이 선포한 군사경계지역을 철폐해야 한다. 세째, 북한측이 남한측에 대등한 경제수역을 선포하거나 혹은 북한이 경제수역의 적용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하거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네째, 남북한간의 관할수역의 경계확정은 원칙적으로 국제법상의 등거리중간원칙에 맞도록 해야 함을 들고 있다.

이밖에도 우리는 일본과 구소련간의 어업협력과정에 있어서 노정되었던 문제점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들 양국간의 어업협력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합의된 등량을 어획하지 못함으로 발생했다. 특히 일본보다 구소련의 어획쿼타소진율<표 17 참조>이 현저히 낮았는데⁹⁾ 이에 따라 1991년부터 양국은 상호 18만 2천톤을 어획쿼타로 결정하고 그대신 구소련은 일본에게 유상어획쿼타 3만톤을 추가로 할애하고 있고 점차 이를 더 늘리고자 하고 있다.

<표 17>		日·蘇 어획쿼타 소진율						단위 : 만톤, %
국	별 1년 도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일 본	쿼 타	75	75	75	75	75	70	60
	소진율	72	71	70	64	57	63	52
소 련	쿼 타	65	65	65	65	65	64	60
	소진율	70	51	32	29	31	19	25

자료 : 유동운(1992)

남북한간의 상호입어형태의 어업협력과정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은 충분히 예전된다. 더군다나 남한의 경우 남획으로 인하여 어업자원의 보존상태가 위험수위에까지 도달해 있어서 북한측의 어획쿼타소진율이 현저히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북한측으로서는 상호입어형태의 어업협력방식은 자신들의 명분에는 적합할지 모르나 실익이 크게 없음으로 해서 성사여부는 불투명하다¹⁰⁾. 하지만 일본과 구소련간의 어업협력의 경우에서와 같이 남북한 양측의 상호입어 어획쿼타를 최소수준에 유지하고 북한측이 남한측에 유상입어쿼타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형시켜 적용한다면 실현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합작투자방안

수산업부문에 있어서 합작투자사업은 자본, 기술 및 판매망을 가진 어업선진국과 개발가능한 어업자원과 풍부한 노동력을 가진 연안개도국사이에 이루어지는 협력방식이다. 따라서 상기의 입어료지불방안이나 상호입어방안과 같은 형태의 남북한 수산업협력은 잠정적인 협력방식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자본과 기술, 자원과 인력 등에 있어 상호보완적 협력이 가능한 합작형태의 어업협력이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교류가 교역단계를 지나 합작단계로 진전되기 위해서는 투자안전장치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 당국도 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1992년 말 조선외국인 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의 제정과 기존의 합영법시행세칙을 개정하는 한편, 1993년초에는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화관리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등을 재정 공포함으로써 대외개방정책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2참조).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제정된 외국인투자 관련법규들은 종전 합영법에 비해 외자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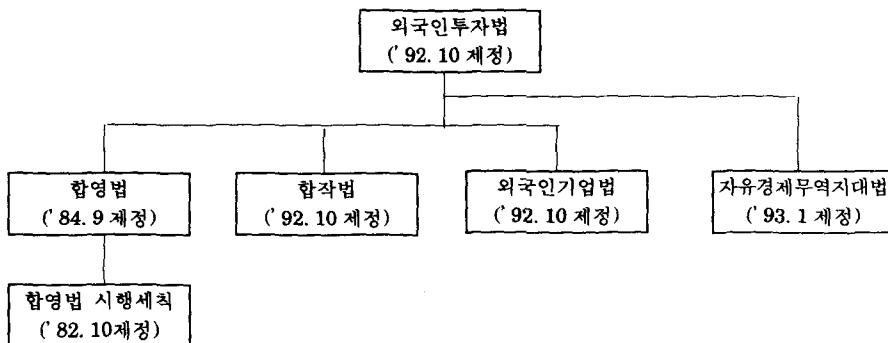
9) 구소련의 경우 어획대상어종이 정어리와 같이 자원량의 변동이 심한 어종이었기 때문.

10) 수산청의 방기혁 사무관은 북한의 경우 트롤어선이 대부분임으로 겨울철(2~3월)에는 우리 트롤어선이 원산 앞에서 명태를, 그리고 우리의 저인방어선이 백령도 부근에서 홍어를 잡고 여름철(5~10월)에는 북한어선이 제주도부근에서 저어를 어획하도록 한다면 상호입어방식은 충분히 실현가능하다고 보고있다.

<표 18> 기존 합영법과의 비교를 통한 북한 외자법령의 주요특징

구 분	기존의 합영법	신설 내지 개정 외자법령
1. 기본원칙	- 평등호혜의 원칙	- 평등호혜의 원칙(외국인 투자법) - 북한사회제도와 자주권존중원칙을 추가(개정 합영법시행세칙)
2. 법령의 투명도와 구체성	- 절반적으로 내용이 불명확하며 추상적임 - 소득세법 이외에는 관련법조항이 정비되지 못함	- 전반적으로 내용의 불명확성과 추상성이 많이 개선됨(특히 합영법시행 세칙은 개선도가 현저함) -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과 외화관리법을 제정하였고, 후속관련법령의 정비가 예상되고 있음
3. 투자유형	- 합영만 인정	- 합영, 합작, 외국인기업(외국인투자법)
4. 투자우대지역	- 규정없음	-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인투자법,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등에 우대조치 규정)
5. 투자대상자	- 외국투자가, 해외거주 조선동포	- 외국투자가, 공화국 영역 밖의 조선동포(단, 개정 합영법시행세칙 제외)
6. 투자의 장려와 제한	- 명문규정 없음	- 투자장려와 재한·금지업종, 투자우대조치 규정(외국인투자법 등)
7. 외화 유출입	- 명문규정 거의 없음	- 외화유출 통제와 외화유입 극대화를 위한 규정 신설(개정 합영법시행세칙, 합작법 등)
8. 외국인 투자보호	- 명문규정 없음	- 국유화금지, 불가피하게 국유화할 경우 보상(외국인투자법)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1993. 3.



<그림 2> 북한 주요 외자법령의 체계도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1993. 3.

의 투명도가 대폭 향상되었고 전향적인 조항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개방정책에 의해 야기될 체제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함께 담고 있어 그 실효성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1991년 6월까지 확인된 북한의 농·수산업부문의 합영현황은 <표 19>에서 보는 바 같이 전체 합영기업의 15%에 머물고 있어 수산업부문만 고려한다면 아주 미미한 상임을 알 수 있다. 이중 자본금이 확인된¹¹⁾ 수산관련합영기업은 영진합영 해산물주식 사로 1989년도에 자본금 100만달러로 북한

11) 지금까지 북한내 합영기업 중 투자규모가 확인된 기업은 17건에 불과하고 그중 500만달러 미만이 6건, 500, 1,000만달러가 1건, 1,000~2,000만달러가 6건 그리고 2,000만달러 이상이 4건으로 알려져 있다.

南北韓 共同漁業政策의 課題

북한의 업종별 합영현황(1991. 6. 현재)							단위 : 건, %
구 분	경 공업	서비스업	기계공업	농수산업	광 업	의 료	합 계
계	22 (25.3)	35 (40.2)	4 (4.6)	13 (14.9)	5 (5.8)	8 (9.2)	87 (100)
국내유치	22 (33.3)	27 (40.9)	4 (6.1)	8 (12.1)	3 (4.6)	2 (3.0)	66 (100)
해외진출	- (0.0)	8 (38.1)	- (0.0)	5 (23.8)	2 (9.5)	6 (28.6)	21 (100)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주간해외투자정보」, 1992. 6.

<표 20> 북한의 일본과의 10대 교역품목('90년도)

항 목	품 목
수 출	① 아연괴 ② 송이버섯 ③ 무연탄 ④ 승용차 ⑤ 남자용 바지 ⑥ 계 ⑦ 생사 ⑧ 담치 ⑨ 성게 ⑩ 연괴
수 입	① 소모작물 ② 인조섬유 ③ 고무제벤트 ④ 승용차 ⑤ 산화알루미늄 ⑥ 스테인레스강 ⑦ 기체팜프압축기 ⑧ 원심분리기 ⑨ 플라스틱제 ⑩ 섬유기계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요북한경제지표」, 1992

과 중국이 각각 51 : 49로 출자하고 있는 수 물가공회사이다.

그러나 <표 20>에서와 같이 북한의 총무역에서 10.1%(1990년 기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과의 교역에서 10대 수출품목 중 3개품목이 수산물인점을 감안한다면 북한당국의 수산업에 대한 관심은 높다고 할 수 있고 실제로 북한의 해외투자유치 희망산업에 수산물가공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북한이 희망하는 수산업부문의 합영대상업종은 1985년 9월 일본남해전철과 조선아시아 무역추진위원회간에 체결된 “기술제휴, 합영에 관한 비망록”에 언급된 수산업관련부문¹²⁾과 91년 4월 북한이 평양을 방문한 일본경제교류대표단에게 요청한 경제협력부문 가운데 수산업관련 기록으로 보건데 수산업 전부문에 걸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투자보장협정 등의 체결로 투자의 위험도를 줄일 수는 있겠지만 북한해역에서의 어업자원에 대한 자료나 정보가 충분치 못하므로 이용가능자원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어려울 뿐 아니라 사회간접자본의 부족과 북한시장의 빈약한 구매력 등의 열악한 투자환경으로 합작사업의 경제성여부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과의 수산업 합작사업에 있어서는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일본시장에의 수출위주의 사업이 초기에는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또는 북한의 이같은 노동력을 이용하여 제3국(예를 들면 러시아)수역에 진출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은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 추구라는 차원에서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남북한의 경제통합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논의되어야하는 만큼 당장 실익이 없더라도 북한이 희망한다면 합작을 통해 자본과 기술 및 인적교류를 심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본다.

12) 양식기술, 어류가공공장, 어구생산기지, 보관창고, 냉동냉장설비도입, 수산물수출 등에 있어서의 협력요청을 하고 있음.

다. 경제통합기의 수산업협력방안

경제교류기와 경제협력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의 남북한간의 동질성이 회복되면 한민족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경제통합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 이 경우 수산업부문에서는 한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의 기초단계로서 남북한간의 수산자원의 공동이용 및 관리를 주 내용으로 하는 공동어업정책을 함께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EC의 경험을 비추어 본다면 남북한간의 공동어업정책의 수립은 경제통합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나타날 것으로 예견된다. 하지만 북한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경제협력형태가 기능적이고 단계적인 접근방법보다는 포괄적이고 일괄적인 것을 미루어 볼 때 경제통합논의 전단계라 할지라도 상호간의 충분한 신뢰관계가 형성된다면 제한적 형태라 할지라도 공동어업정책은 충분히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것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장에서 언급할 것이다.

V. 남북한 공동어업정책방안

남북한간의 공동어업정책이 수립된다면 그 구체적 내용은 역시 EC의 공동어업정책의 기본적 틀에 따라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공동어업정책의 주요내용은 첫째 공동어로수역의 설정방안, 둘째 공동어로수역내의 자원의 보호와 관리방안, 세째 공동시장의 조직화방안, 네째 구조조정방안, 다섯째 해외협력방안으로 구성될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남북한간의 공동어업정책이 추진되려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전제가 먼저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남북한간에 물자 및 인적교류 및 상호협력을 통하여 상당한 신뢰가 조성되고 민족의 동질성이 제법 회복된 상태이어야 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남북한 경제공동체형성에 대한 구체적 실행합의가 있으면 바람직하지만 없는 경우라도 적어도 통합의 방향에 대한 어느 정도의 콘센서스에 입각한 남북한 경제공동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

둘째, 공동어업정책수행과정속에서 일어나는 각종 어업분쟁의 해결 및 정책조정을 위해서, EC위원회 내에서 회원국간의 공동어업정책을 수행조정하는 제14전문국과 같은 수산전문위원회를 상기의 남북한 경제공동위원회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접국들과 어업협력문제는 이 위원회가 전담한다.

세째, 남북한간의 경제수역내에 부존되어 있는 수산자원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현행의 남북한간의 영해 및 관할수역을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인정된 제원칙들에 의거하여 재설정되어야 한다.

네째, EC의 경우 어업분쟁을 포함하는 모든 경제적 분쟁의 최종적 판정기구로 EC 사법법원이 존재하나 우리의 경우 이민족간의 통합이 아닌 단일민족간의 통합이므로 굳이 이같은 조직이 필요치는 않으며 가능한 한 수산전문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되 해결불능인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남한측이 양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1. 공동어로수역의 설정

남북한 어민들에 의한 남북한수역으로의 접근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한다. 하지만 EC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각 연안으로부터 12해리(합의에 의해 조정가능)내에서는 전관수역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도 일정기간을 두고 합의하에 점차 폐지해 가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어로수역은 전관수역으로부터 러시아, 일본, 중국과의 경계선까지로 하거나 이병기(1990) 교수와 같이 공동어로수역을 한정하여 외측에 공동자원조사수역을 설정해 놓았다가 점차 확대해 가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비록 공동수역안이라도 남획의 가능성 있는 어종에 대해서는 남북한간의 합의 하에 어획량 및 어선규모를 규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공동어로수역내의 자원의 보존과 관리

앞서 언급한대로 EC의 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정책의 주된 내용은 해당어종별 총허용어획량(TAC)의 연별고정, 기술적인 자원보존조치 및 감시감독조치 등이다.

이처럼 총허용어획량(TAC)을 기초로 한 쿼타시스템을 자원관리의 기본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는 EC의 자원관리방식은 전통적으로 어업권제도와 어업허가제도를 어장관리의 기조로 운용해온 우리나라의 어업관리정책과는 상이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남북한이 모두 국제어업협약의 규제하에 서나 혹은 다른 연안국의 200해리내에서의 조업을 할 경우 어종별 쿼타시스템에 의한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MSY나 TAC 등을 기초로한 쿼타시스템이 전혀 새로운 어장관리방식은 아니다.

그러므로, 남북한 공동어로수역에서의 어업자원의 보존과 관리방식으로 EC가 채택하고 있는 총어획량을 기초로 한 쿼타시스템을 도입하여 그것을 남북한 공동어로수역에서의 기본적인 어장관리방식으로 하고 여기에다 우리의 전통적인 허가제도를 보완책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과학적인 자원조사가 이루어져 MSY나 TAC의 추정이 가능한 어종에 대해서는 EC의 쿼타시스템을 이용한 자원관리정책을 적용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어획선별량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허가제를 채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어획량이나 어선척수를 제한하는 방식 이외에도 특정어기, 어구, 어장등에 대한 제한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기방안이 성공적으로 달성되기까지에는 많은 난관이 존재한다. EC와 같이 많은 비용을 들여 감시 감독을 강화할 수도 있겠지만 한일간의 어업분쟁의 경우에서 보는바와 같이 불법어로의 문제(주로 우리측에 의한 것임)는 끊이지 않는다. 결국 이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은 남북한 어민 모두의 어업자원보존의 중요성과 불법어로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에 대한 대각성이 실행되어야 하며, 양 국정부의 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의지를 이들에게 충분히 인식시킬 때 가능하다고 본다.

3. 공동시장의 조직화

남북한간에 공동어업정책이 시행될 즈음이면 북한의 대외개방은 상당히 진전되었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체제붕괴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전히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기반으로 한 부분적인 시장 메카니즘의 도입이라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리라 예측할 수 있겠다. 따라서 경제운용시스템이 다른 남북한간에 EC의 경우와 유사하게 수산물의 공동시장을 조직하고 운용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당분간은 제한적 형태로 운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 경우 남북한이 공동으로 보조를 맞출 수 있는 것이 수산물의 대외거래 부문이다. 즉 남북한이 수산물을 수출입하게 되는 경우 우선 남북한이 서로의 필요를 충족하고 남는 부분은 수출하며 모자라는 것에 한해서 수입하도록 하되 남북한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일체의 관세부과를 철폐한다¹³⁾. 그리고 수출품에 있어서는 수산전문위원회의 주도하에 수출가격과 수입가격에 있어서 공동가격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4. 구조조정정책

남북한의 전면적인 수산업부문의 구조조정문제는 경제통합이후 남북한 산업구조조정단계에서 논의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공동어업기간중의 수산자원의 적정관리나 보호의 측면에서 필요한 구조조정문제에 한정 한다. 특히 앞서 <표 7>의 남북한간의 척당 생산성의 비교에도 나타났듯이 특히 남한의 자원보존실태는 아주 열악한 상태에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구조조정정책은 과다어업능력의 사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가 기존어선대의 근대화 및 양식설비의 근대화 등에 남북한이 서로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 보인다. 특히 공동어로수역에 투입되는 남북한의 선박은 EC의 경우와 같이 남북한 공동체 선적제도를 도입하여 남북한 경제공동위원회 산하의 수산전문위원회에서 조정·통제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으리라 보인다.

5. 대외협력

남북한의 공동어로수역에 외국의 조업허용 및 외국의 경제수역에의 남북한 어선의 조업문제는 수산전문위원회가 전담하여 교섭한다. 물론 이 두가지 모두를 다루기 힘들 경우에는 남북한 공동어로수역에서의 외국어선의 조업에 관한 문제만이라도 남북한간의 합의위에서만 시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VII. 맷 음 말

우리는 이상에서 현재 수산자원의 이용과 관련하여 국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제 협력 형태를 고찰하고 현 남북한간의 경제교류 및 협력과정에서 가능한 협력방안들을 모색하였다. 그 방법에 있어서는 남북한간의 수산업부문에의 협력의 방향과 속도 역시 정기적인 남북한 경제통합의 시나리오에 의해 좌우될 수 밖에 없다는 인식하에 경제교류기와 경제협력기 및 경제통합기로 나누어 생각해 보았다. 그리하여 경제교류기에서는 구상무역형태를 통한 수산물의 직·간접교역 확대방안을, 경제협력

13) 동서독의 교역이 GATT에 의해 국내거래로 인정받았기에 남북한간에도 이에 준한 대우를 받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기에는 잉여원칙에 입각한 입어료지불방안과 상호주의원칙에 입각한 상호입어방안, 더 나아가서는 남한의 선진어업기술 및 자본을 북한의 값싼 노동력 및 자원과 결합시키는 협작형태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이같은 협력과정에서 상호신뢰구축이 되고 경제통합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우에 있어서 EC의 경우와 같이 남북한 공동어업정책방안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 실천방안을 언급하였다.

특히 본고의 초점이 남북한 공동어업정책의 과제임을 감안하여 EC 공동어업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였고 이를 모델로 남북한의 공동어업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물론 EC의 경우와는 달리 남북한간에는 체제의 상이성이 존재함으로서 공동어업정책의 내용은 약간씩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여 제시하였다. 물론 보다 장기적으로 남북한의 경제통합이 성사된 이후 전체적인 비교우위구조에 따른 남북한 산업구조조정단계를 고려한 수산업의 협력방안에 대한 언급도 필요하지만 이것은 향후 남북한 경제협력이 진전되면서 한민족 경제공동체 형성이 가시화될 때의 과제로 남겨둔다. 한 가지 덧 볼일 것은 이상의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북한의 수산업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존재하여 제한된 정보하에 진행될 수 밖에 없었음을 밝혀둔다. 따라서 본 논문의 결과를 실제 정책수행에 적용할 경우에는 이상과 같은 제약을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參考文獻

<國內文獻>

- 강정모, 「북한의 무역 및 대외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1.
 국토통일원, 「북한경제종합평가」, 각년도.
 _____, 「북한의 어로실태조사」, 1982.
 김명기, "해양법질서와 남북한 관계", 해양정책연구 제2권 1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방경제협력의 중장기 전망」, 북방정책보고회, 1992.
 대한무역진흥공사,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1992.
 박명섭, "유럽공동어업정책에 관한 소고", 수산경영논집, Vol. 23. No. 2, 1992.
 박영호, "한국수산업의 현황과 전망", 세계수산업의 현황에 관한 국제심포지움 발표논문.
 박종국, "일본수산업 성장의 종합분석", 수산경영논집, Vol. 23, No. 1~2, 1992.
 산업연구원, 「북한」, 1992.
 유동운, "북방각국의 대외어업협력현황과 우리나라의 대응", 수산연구 제6호, 1992. 7.
 이병기, "남북한 공동어로수역 - 모델설정과 운용방안 - ", 국토통일원, 1990.
 이병기·최종화, "한반도 주변수역의 국제어업관계와 그 전망", 수산해양교육 연구 제3권 1호, 1992. 1.
 이상만, "남북한 경제통합의 실현방안", 한국경제학회 국제경제학자대회 발표 논문, 1992. 8.
 이서환, "한·일어업협정 20년의 평가", 대한국제법학회 논총, 제30권 2호, 1985.
 이영준, "한국수산업의 문제점 및 법제에 관한 소고", 대한국제법학회 논총, 제30권 1호, 1985.
 장효상, "법적 타당성의 측면에서 본 남북한 경제교류와 협력방안", 대한국제법학회 논총, 제35권 1호, 제67호, 1990. 6.
 지정일, "한·일·미의 어업관계의 쟁점 및 분쟁해결책", 대한국제법학회 논총, 제23권, 1978.
 최신립, 「북한의 무역규모」, 산업연구원, 1991.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1990. 10.

수산경영론집

- _____, 「남북한 경제협력의 당면과제와 두만강지역 개발계획」, 1992. 6.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북한의 과학기술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 1991.
- 한국무역협회, 「주요북한경제지표」, 1992.
- 한국수산회, 「수산연감」, 1991.
- 한국수출입은행, 「북한의 무역정책과 무역구조」, 「주간해외투자정보」, 727호, 1992. 1.
- _____, 「북한의 외국인투자유치현황과 대외개방전망」, 「주간해외투자 정보」, 747호, 1992. 6.
- _____, 「북한의 무역 및 외국인 투자제도」, 해외투자연구소, 1991.
- _____, 「북한의 경제와 경제협력방향」, 해외투자연구소, 1991.
- _____, 「북한의 외자법령의 정비에 따른 우리의 대북투자 정책방향」, 조사월보, 1993.
- 한국은행, 「91년 북한의 GNP추정결과」, 1992.
- 홍택기 외 다수, 「남북한 경제관계발전을 위한 부문별 연구과제」, 한국개발연구원, 1991.
- 황의각, 「북한경제론」, 평화연구총서, 1992.

<外國文獻>

- 佐竹五六, “國際化への政策的對應”, 漁業經濟研究, 第35卷 第2・3合併號.
- 長谷川彰, “200海里體制化以降の國際漁業關係の變容”, 漁業經濟研究, 第31卷, 第2.3合併號.
- 長谷川彰外2人, 「新海洋時代の漁業」, 農山漁村文化協會, 1988.
- 日本水產廳, 「漁業協定の概要」, 1988. 6.
- EC commission, 「The common fisheries policy」, 1991.
- _____, 「Proposal for a Council Regulation on the common organization of the market in fisheries products」, March. 1992.
- O.S. Stokke, “Transnational fishing : Japan's changing strategy”, Marine Policy, July. 1991., pp. 231~243.
- Current developments in the EC, Marine Policy, 각호.
- M. J. Valencia, “Sea of Japan : Transnational marine resource issues and possible cooperative responses”, Marine Policy, Nov. 1990., pp. 507~525.
- FAO, 「Yearbook of fishery statistics」, 1989., Vol. 69.

The Issues of South and North Korea's Common Fisheries Policy - Based on EC Common Fisheries - Policy

Kim, Ki Soo and Jung, Hyung Chan

Summar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issues of South and North Korea's common fisheries policy that is expected to be realized in the process of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paper has shown feasible policy alternatives of fisheries cooperation according to the steps of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paper has examined the possibilities and economic effects of several policy alternatives as follows ; South Korea's fishing in North Korea's fishing area with fishing fee, limited reciprocal fishing in the opposite country's fishing zone, joint ventures between two countries, and South and North Korea's common fisheries policy.